



남성용 가발회사 고객명단의 영업비밀 해당성 및 부정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01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성6년(와) 제4404호
판결 일자	1996. 4. 16.	판결 결과	원고 일부승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영업 비밀	고객명단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손해배상, 손해액의 추정		

02 사건 개요

원고는 남성용 가발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본점 영업소(신오사카점) 외에 지점으로 신사이바시점, 산노미야점, 히메지점을 두고 상기 각 점포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었다가 퇴직하여 오사카시 츄오구에서 남성용 가발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신사이바시점에서 고객명단을 절취하고 이를 사용하여 원고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소지한 원고 고객명단 사본의 폐기 및 피고의 이익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피 고
<p>원고 고객명단은 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을 충족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p>		<p>원고 고객명단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p>
<p>피고는 원고의 신사이바시점에서 고객명단을 절취하고, 이를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고객을 탈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4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p>		<p>피고는 원고의 신사이바시점 점장의 승낙을 얻어 고객명단을 복사한 것으로서 절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고객은 피고를 따라온 것이지 피고가 원고 고객명단을 이용하여 부당한 권유를 했기 때문에 오고 있는 고객이 아니다.</p>
<p>피고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는 이와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p>		<p>원고는 피고가 얻은 이익액으로 컷, 파마 1 회당 금액, 또는 가발 1 대당의 단가를 들고 있지만, 그것들은 매출이며, 그대로 원고의 일실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고객이 피고의 점포로 컷, 파마를 하러 오거나 가발을 주문했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원고의 일실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p>

04 판결 요지

<p>원고 고객명단은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선전 광고 비용을 지출해서 간신히 획득한 고객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각 고객의 두발 상황 등도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이러한 고객은 향후 정기적인 이발 등 이외에도, 가발 구매 변경의 수요도 예상되므로, 원고 고객명단은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p>
<p>원고는 원고 고객명단의 표지에 "극비"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원고 신사이바시점의 카운터 내부의 고객은 보이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비밀 관리성이 인정되며, 원고 고객명단에 포함된 정보의 성격, 내용으로부터 비공지성도 인정된다.</p>
<p>피고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동시에 상기의 부정취득행위로 얻은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p>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4조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동법 5조 1항에 의해, 피고가 얻은 이익액이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05 Key Point

원고 고객명단은 유용성, 비밀관리성, 비공지성이 충족되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추정 규정에 따라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고의 이익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한 사례이다.
